

[사 건 명] 행심 2018 - 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서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7. 12. 21. 복도에서 ●●●(2학년)은 청구인(1학년)이 자신을 째려
본다고 생각하여 왜 째려 보냐며 시비를 걸었음.

나. 청구인은 ‘내가 쳐다보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하였고, ●●●
●과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음.

다. 청구인이 ●●●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 그냥 가려고 하자

청구인이 ●●●의 가방을 발로 밟음. 이에 ●●●이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림.

라. 2017. 12. 21. 담임교사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접수됨.

마. 2017. 12. 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조치하고, ●●●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 조치하였음.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맞은 후에도 ●●●은 청구인에게 계속 자신을 쳐보라고 하며 싸움을 걸었지만 청구인은 대응하지 않았다.

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주먹으로 얼굴을 친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하고, 무방비 상태의 누워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발로 찬 행위에 대한 폭력성은 배제된 채 대응과정에서의 일부 가방을 밟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편파적인 처분이다.

다. ●●●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을 때 청구인은 외면했음에도 또 욕설로 시비를 걸었고, 열상이 두 군데나 생기는 폭력에도 맞기만 했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내려진 가해자 처분은 부당하다.

라. 이 처분으로 인해 우등생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혜택에서도 배제되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오해해서 먼저 시비를 건 행위 및 상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나, 청구인도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 가려고 할 때 청구인이 ●●●의 가방을 발로 밟은 행위는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폭력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본 처분을 조치하였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12. 21. 복도에서 ●●●(2학년)은 청구인(1학년)이 자신을 찌려 본다고 생각하여 왜 찌려 보냐며 시비를 걸었다.

나. 청구인은 ‘내가 쳐다보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과 서로 욕설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 그냥 가려고 하자 청구인이 ●●●의 가방을 발로 밟았다. 이에 ●●●이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라. 이로서 청구인은 아래턱과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이 ●●●에게 욕설한 행동은 모욕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12. 28.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자일체 감동캠프를 부가 처분 하였다.

청구인과 ●●●이 상호 욕설하며 말싸움 도중 청구인이 ●●●의 가방

(쌀자루)을 발로 밟아 ●●●의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어느 정도 유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해 청구인은 ●●●으로부터 더 큰 폭행을 당하여 아래턱 및 귀 왼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에게 가해학생으로서 5호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모두 상호 동일하게 접촉 금지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에 대해서는 별도로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입은 피해 정도, ●●●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2호 처분은 과중하다. 청구인의 모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정도 낮음(1점)으로 판단된다(합계 2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1호 서면사과 조치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이기도 한 청구인의 피해정도, ●●●에 대한 처분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 청구인에 대한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이에 부가한 부자일체 감동캠프 처분을 취소하고, 감경조치 하여 1호 서면사과 처분함이 적정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